

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93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1. 11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안산시 산업명장 심사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5년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산업명장 심사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일부개정조례안 : **【붙임 1】**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**【붙임 2】**
- 다. 관계법령발췌서 : **【붙임 3】**
- 라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 - 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: **【붙임 4】**
- 바.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 - 입법예고 : 2025. 9. 10. ~ 2025. 9. 30. (20일간)
- 사. 기타 참고사항
 - 1) 현행조례 : **【붙임 5】**
 - 2) 방침결정문 : **【붙임 6】**

【붙임 1】

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국		산업지원본부
입	산업진흥과장	박 종 미
안	산업행정팀장	김 은 아
자	담 당 자 (연락처)	한 아 름 (481-2857)

【붙임 2】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2조(준속기한) 위원회의 준속기한은	제12조(준속기한)	-----		
<u>2025년 12월31일까지</u> 로 한다.	<u>2030년 12월31일</u>	-----		.